

제2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

당사 정관 제20조에 의한 제20기(2020.01.01 ~ 2020.12.31)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1. 일 시 : 2021년 3월 26일(금요일) 오전 9시

2. 장 소 :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14 인베니아(주) 본사

3. 회의의 목적사항

1) 보고사항: 감사보고, 영업보고,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, 외부감사인 선임보고

2) 결의사항 :

제1호 의안 : 제20기 별도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

제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 (별첨1)

제3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 (별첨2)

3-1호 의안 : 사내이사 구동범 선임의 건

3-2호 의안 : 사내이사 이택규 선임의 건

제4호 의안 :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(후보:이준용) (별첨3)

제5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(별첨4)

4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5.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

상법 제542조의4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, 제5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소집 통지·공고사항은 당사 본점 및 (주)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고 금융감독원, 한국거래소 및 당사 홈페이지에 전자공고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6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
- 직접행사 : 주주총회 참석장, 신분증

- 대리행사 : 주주총회 참석장,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 날인), 대리인 신분증

7.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

3월 18일(목)까지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당사 홈페이지(www.inveniacorp.com)에 공고할 예정입니다.

2021년 03월 05일

인베니아주식회사
대표이사 구동범

직인
생략

(별첨 1)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변경전 내용	변경후 내용	변경의 목적
<p>제2조(목적)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평판, 반도체 제조장비 개발, 제조 및 판매 2. 태양전지 제조장비의 개발, 제조 및 판매 3. 수소정제모듈의 개발, 제조 및 판매 4. 자동화 장비의 개발, 제조 및 판매 5. LED 장비의 개발, 제조 및 판매 6. LED 소자 및 응용제품의 개발, 제조 및 판매 7. OLED 제조장비의 개발, 제조 및 판매 8. 인쇄전자 장비의 개발, 제조 및 판매 9. 산업용 프린터 장비의 개발, 제조 및 판매 10. 도소매 및 무역 11. 임가공 12. 부동산 임대업 13. 디지털 사이니지 제조 및 판매 14. 위의 각호의 장비제조와 관련한 부품제조업 15. 위의 각호의 장비제조와 관련한 사후관리 및 용역제공 관련 사업 16. 위의 사업에 준하는 부대사업 일체 	<p>제2조(목적)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평판, 반도체 제조장비 개발, 제조 및 판매 2. 태양전지 제조장비의 개발, 제조 및 판매 3. 수소정제모듈의 개발, 제조 및 판매 4. 자동화 장비의 개발, 제조 및 판매 5. LED 장비의 개발, 제조 및 판매 6. LED 소자 및 응용제품의 개발, 제조 및 판매 7. OLED 제조장비의 개발, 제조 및 판매 8. 인쇄전자 장비의 개발, 제조 및 판매 9. 산업용 프린터 장비의 개발, 제조 및 판매 10. 2차전지 제조장비의 개발, 제조 및 판매 11. 포장,용기 제조장비의 개발, 제조 및 판매 12. 도소매 및 무역 13. 임가공 14. 부동산 임대업 15. 디지털 사이니지 제조 및 판매 16. 위의 각호의 장비제조와 관련한 부품제조업 17. 위의 각호의 장비제조와 관련한 사후관리 및 용역제공 관련 사업 18. 위의 사업에 준하는 부대사업 일체 	<p>사업 목적 추가</p>
<p>제8조의3(주식등의 전자등록) 회사는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의3(주식등의 전자등록) 회사는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	<p>관계법령 개정 반영</p>
<p>제12조(신주의 배당기산일) 회사가 유상증자,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</p>	<p>제12조(신주의 동등배당)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,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.</p>	<p>관계법령 개정 반영</p>

변경전 내용	변경후 내용	변경의 목적
<p>제16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</p> <p>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.</p> <p>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</p> <p>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, 이사회에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16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</p> <p>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.</p> <p>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,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.</p> <p>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관계법령 개정 반영</p>
<p>제20조(소집시기)</p> <p>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.</p> <p>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,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</p>	<p>제20조(소집시기)</p> <p>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,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.</p>	<p>관계법령 개정 반영</p>
<p>제32조(이사의 수)</p> <p>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하고,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.</p>	<p>제32조(이사의 수)</p> <p>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6인 이하로 하고,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.</p>	<p>관계법령 개정 반영</p>

변경전 내용	변경후 내용	변경의 목적
<p>제34조(이사의 임기)</p> <p>신규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재선임할 경우 상법 제383조에서 정하는 임기를 한도로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선임할 수 있다.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.</p>	<p>제34조(이사의 임기)</p> <p>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.</p> <p>② 관계 법령의 제한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임기를 한도로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임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③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</p>	<p>이사 임기 변경</p>
<p>제51조(감사위원회의 구성)</p> <p>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7조의2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,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</p> <p>③ 최대주주,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, 그밖에 상법 시행령 제38조 1항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p> <p>④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.</p>	<p>제51조(감사위원회의 구성)</p> <p>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7조의2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제37조의2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.</p> <p>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한다.</p> <p>③ 감사위원회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 다만,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이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.</p> <p>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p>	<p>관계법령 개정 반영</p>

변경전 내용	변경후 내용	변경의 목적
<p>제56조(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)</p> <p>①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,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⑤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,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.</p> <p>⑦ 제6항에 따라 승인 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⑧ 대표이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56조(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)</p> <p>①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,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⑤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,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.</p> <p>⑦ 제6항에 따라 승인 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⑧ 대표이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관계법령 개정 반영</p>

변경전 내용	변경후 내용	변경의 목적
<p>제59조(이익배당)</p> <p>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.</p> <p>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.</p> <p>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. 다만, 제56조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.</p>	<p>제59조(이익배당)</p> <p>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.</p> <p>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.</p> <p>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. 다만, 제56조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.</p>	<p>관계법령 개정 반영</p>
<p>부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, 제8조의3, 제14조, 제15조, 제19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부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이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) 제34조의 개정 규정은 이 정관 시행시 임기 중에 있는 이사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.</p> <p>제3조(감사위원회위원 선임에 관한 적용례) 제51조 제3항 단서의 개정 규정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위원회위원부터 적용한다.</p>	<p>관계법령 개정 반영</p>

(별첨 2) 사내이사 후보자 (2명)

성명	생년월일	주요약력	회사와의 거래내역	최대주주와의 관계	5년 이내		취업제한 결격사유 유,무
	추천인				체납 여부	회생/파산 진행사실 여부	
구동범	1975.01.31	前 Charles Schwab & Co. 前 Aon Risk Service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
	이사회	前 LIG 미주법인 경영임원 이사 現 인베니아(주) 대표이사					
이택규	1970.06.23	前 LG화재 前 휴세코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
	이사회	前 디디고 상무 現 인베니아(주) 재무이사					

(별첨 3)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(1명)

성명	생년월일	주요약력	회사와의 거래내역	최대주주와의 관계	5년 이내		취업제한 결격사유 유,무
	추천인				체납 여부	회생/파산 진행사실 여부	
이준용	1956.06.09	前 KBS 충주방송국 국장 前 KBS N 사장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
	이사회	前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KBCA 회장					

(별첨4) 이사 보수한도

구분	당기 이사보수한도(안)	전기 이사보수한도
금액	20억원	20억원